

소수집단학생 지원 규정

제정 : 2023. 08. 04.

담당 : 교학팀(02-950-5405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정의)	제3조(지원범위)	제4조(지원체계)
제5조(기타)			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소수집단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소수집단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학생을 말한다.

1. 장애 학생
2. 외국인 유학생
3. 다문화가정 학생
4. 북한이탈주민 학생
5. 기타 총장이 인정한 소수집단 학생

제3조(지원범위) 소수집단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수·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
2. 대학생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
3. 적응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(지원체계) ① 업무에 따른 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장애 학생 지원: 장애학생지원센터
2. 외국인 유학생 지원 : 국제교류원
3.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학생 지원: 교학팀

② 담당부서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부서 및 학과에 요청하며 소수집단학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

야 한다.

제5조(기타)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.